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I 들어가며	003
1. 무연고 사망 현황	004
2.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007
II 무연고자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절차안내	011
1. 유족 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 확인	013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034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042
4.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재산 관리	049
5.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054
6.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056
7. 상속인 수색 공고	057
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부여	058
9. 국가 귀속	062
III 행복구청 김나영계장의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 사례 ...	067
IV 마치며.....	101
V 부록	107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108
Q&A 빨리 찾아보기	119



들어가며

1. 무연고 사망 현황
2.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I 들어가며

01 무연고 사망 현황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1인 가구 수는 2000년 222만 4000가구이었다가 2012년 453만 9000 가구로 늘어 전체의 25.3%, 2015년에는 27.2%를 차지할 만큼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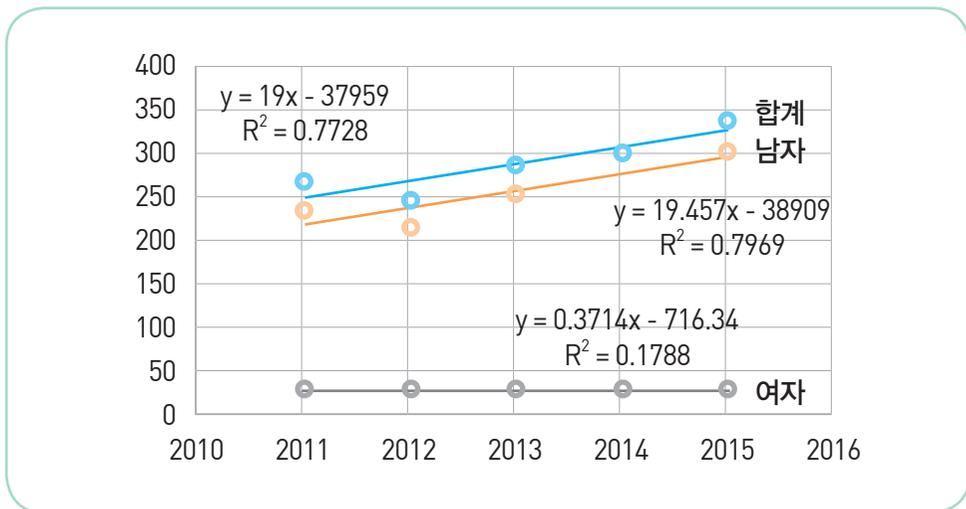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가 ‘나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나홀로 죽음을 통상적으로는 ‘무연고 사망’이라 지칭한다. 과거에는 주로 독거노인들이 가족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이 홀로 남겨져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한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를 ‘고독사’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그 사회적 의미와 대안을 찾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지만, 민법상으로 무연고자란 상속인의 부존재, 즉 상속인이 없는 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홀로 사망한 사람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상 상속인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연고 사망이라 보기 어렵고, 나홀로 죽음 또는 고독사의 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나홀로 죽음의 경우 공부상 상속인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무연고 사망이라 넓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2011-2015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693명,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최근 2014년부터 1000명을 넘기면서 매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7년 올해는 1,800명이 넘는 무연고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¹⁾

아래 그림은 2011~2015년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무연고 사망자의 나이 및 성별에 관한 그래프이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은 2011~201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세는 특히 남성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세와 일치한다.

〈그림 1〉 2011~2015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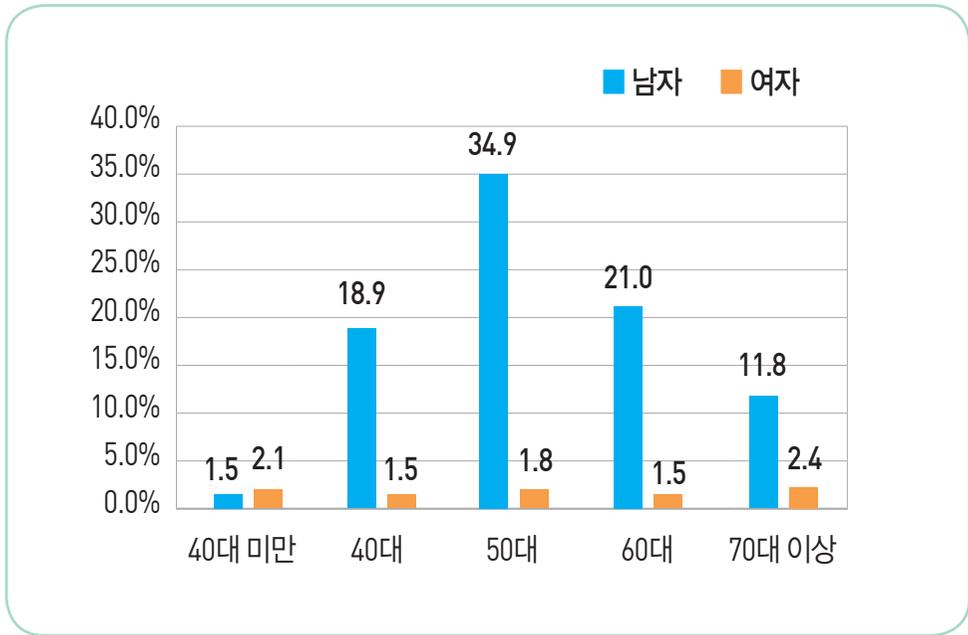


1) 강기철, 손종윤,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61권, 2017.

2) 강기철, 손종윤, 앞의 글(2017)



〈그림 2〉 2015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의 나이 및 성별 현황³⁾



〈그림 2〉의 2015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의 나이와 성별 현황에서도 이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특히 50대 남성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이 34.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결국 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남성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세가 높으며 무연고 사망 고위험군은 50대, 60대, 40대 남성임을 파악할 수 있다.

3) 강기철, 손종윤, 앞의 글(2017).

02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에 우선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둘째는 무연고자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 중 장례절차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28조 및 제4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제45조의 규정,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매뉴얼 등에 의해 장제를 위한 처분 권한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장이나 지자체 장에 부여되어 있어 비교적 원활히 처리되고 있다.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일이다. 무연고자의 장례절차가 아닌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설장이나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무연고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즉 무연고자가 남긴 임대차보증금이나 통장예금, 자동차, 생활가전과 같은 유류품 등의 처리는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민사상의 일로서 민법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의 규정은 다소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역시 채권자 및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처리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무연고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비록 각 구청에 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으나 대부분은 장제 절차를 처리하는데 그치고, 장제 이외의 유류품 등 잔여재산처리 절차까지 진행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연고 사망에 대한 담당자가 장례절차부터 상속재산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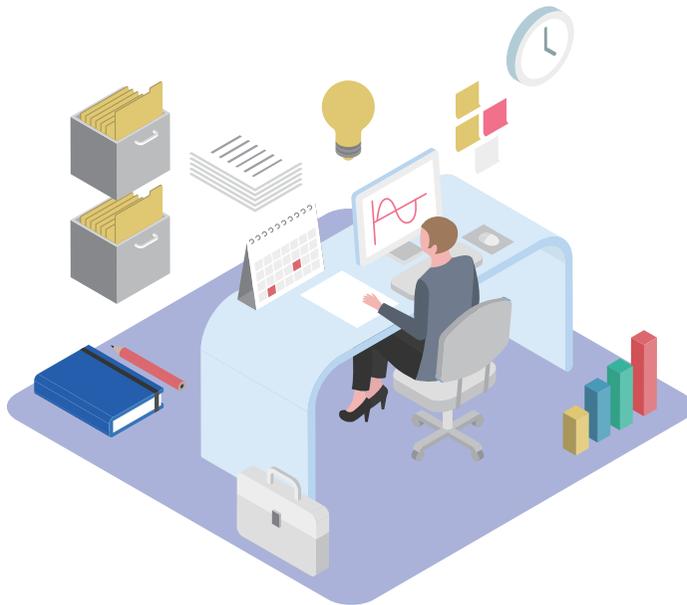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처리 절차를 진행하려면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을 검색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무연고 사망자에게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민법에 예정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동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진행할 것인지, 구청의 무연고자 장사업무 담당자가 진행할 것인지 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또, 시설의 경우라면 기타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이 없어 관할 검찰청에 이를 의뢰해야 하므로 업무의 진행이 더디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비용을 법원에 예납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속재산의 가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통 무상으로 활동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혹은 시설의 사회복지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변호사가 아닌 실무 담당자가 무보수로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인 검색공고를 청구하고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를 하는 등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기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청산과정에서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결국에는 민사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더불어, 무연고자의 경우 보통 소액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처럼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청산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종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무연고자일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무연고자의 소액 상속재산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연고자 사망 시의 상속재산 처리 업무는 현재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고, 그 처리 과정이 길고 복잡할 뿐 아니라 법적지식도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안내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시설 종사자 등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한 현행법상 처리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실제 업무처리 과정을 완결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의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연고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

1. 유족 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 확인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4.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재산 관리
5.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6.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7. 상속인 수색 공고
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9. 국가 귀속





II 무연고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잔여재산을 남기는 경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자 사망 시의 상속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래 두 가지 사례는 무연고자 사망 시 주로 발생하는 민원을 간략하게 구성한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던 무연고자가 사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고, 두 번째 사례는 시설에서 생활하던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시설 종사자가 종종 부딪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정한 민법상의 기본적인 무연고자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택을 임차하여 홀로 살고 있던 임차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남은 보증금도 처리해야 하고 망인의 유류물품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아도 돌아가신 분의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어르신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며, 연락이 되는 형제, 자매 등 연고자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어르신의 상속인을 찾지 못해 어르신이 남기고 가신 상속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01 유족 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 확인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남긴 채 홀로 사망하였다면 먼저 공부 상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대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사망한 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민법상으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에 포함이 되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있는지 수색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의 범위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은 법에 정해진 범위의 친족들에게 상속된다. 이 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친족들을 상속인이라 한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는 상속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가 1순위 상속인, 만약 부모와 자녀는 없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언제나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하였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이때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다).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3촌이나 4촌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이다. 즉 사망한 자의 자녀들이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들이 1순위 상속인이다. 사망한 자의 자녀들도 있고 손자녀들도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만이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 중 사망한 자가 있고 그의 자녀들이 생존해 있다면 그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양자의 경우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다. 양자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상속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부모의 상속인도 될 수 있다.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친양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친양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상속인만 될 수 있고, 자신의 친부모의 상속인은 될 수 없다.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사망한 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선조들을 말한다. 아버지 쪽 직계 선조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 직계 선조들도 포함하고 이혼했더라도 관계없다.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만일 형제자매의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르거나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더라도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같기 때문에 형제자매로서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4순위 상속인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포함되는데,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란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등)이거나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란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을 말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가장 촌수가 낮은 방계혈족이 우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의 방계혈족들은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이 해당된다.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고,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한 사실상 배우자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신고 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상속인과 거주 장소, 국적은 관련이 없다. 즉 북한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 국적이더라도 상속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민법은 피상속인의 ①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②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4순위까지로 상속인을 정해두었는데, 배우자도 없고 4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안내서를 통해 설명하는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가 개시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즉시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임신과 출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쉽게 확정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혼인 중에 출생한 경우 어머니의 배우자였던 자가 아버지로 추정될 뿐이다. 즉,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아버지가 실제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라면 어머니의 배우자가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44조는 혼인신고 후에 임신을 한 경우 어머니의 배우자를 아버지로 추정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지난 후에 출산한 경우 어머니의 배우자를 아버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어머니의 배우자였던 자를 아버지로 추정한다.⁴⁾ 만일 위 경우들에 해당하여 어머니의 배우자인 자가 아버지로 추정되지만 실제 친아버지가 따로 있는 경우, 추정되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로 추정되는 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즉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지나기 전에 출생한 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이 지난 후 출생한 자의 경우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하는데, 이 때 자녀는 실제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아야만 친자녀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실제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인지란 실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관할 행정관청에 가서 인지의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실제 아버지가 인지 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인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인지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자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을 할 수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언제라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지 신고를 하거나 인지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출생한 때로 소급해서 실제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되고,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민법 제860조 단서는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간단히 설명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당하게 이전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 인지된 상속인이 그 재산이 자신의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는데, 뒤늦게 인지청구의 소가 확정된 경우이다. 인지청구의 소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에 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모두 완료된 이후 뒤늦게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인지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상속인이 있는 때에 해당함으로써 절차를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재판을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인지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확정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되고 그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만일 인지청구의 소가 뒤늦게 확정되었는데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치면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수증자들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간 이후라면 문제다. 인지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간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860조 단서에 따라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연고자 분여청구에 의하여 남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은 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상속재산을 분여 받은 자는 민법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분여 받은 자에게 분여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로 귀속이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역시 제3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 [헌법재판소 2015. 4. 30. 2013헌마623]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임이 확인되었으나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된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친생부인의 소 없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절차를 신설하는 등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정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 개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음.

실제 부모와 다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

민법은 실제 부모와 다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되어 어머니의 배우자와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아버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이고, 그 외의 경우에 친생자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이다. 위 소송을 통하여 친생자관계가 바로 잡히면 실제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다 무연고로 사망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자(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인, 이웃사람 등)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대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유족 수색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위와 같이 이웃에서 무연고자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구청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상속인을 수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회보장수급자인 경우 구청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은 때에는 제적등본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보장수급 신청 시 제적등본을 일률적으로 제출받는 것은 아니므로 제적등본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민원여권과 등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상속재산의 처리를 위해 상속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우연히 행정망에 상속인의 연락처가 남아있는 경우 전화를 해 보거나 연락처가 없다면 공부 상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의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을 취해볼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회보장수급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구청에서는 망인의 상속인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상속재산 처리에 개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망자의 가족을 찾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이나, 만약 상속인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다 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무연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무연고자란, 연고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는 혈연이나 인척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넓게는 주변 이웃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을 통칭하기도 한다. 법률상 무연고자의 개념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한 상속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민법은 다음과 같이 무연고자를 정의한다.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 민법 조문에 의하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무연고자라 할 수 있는데, 이는 ①상속인이 없는 경우 뿐 아니라 ②상속인이 있다하더라도 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상속인이 없는 경우’란, 1) 민법 제1000조에서 제 1003조에 정한 상속인 또는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 2) 상속인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이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한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3) 상속인이 있더라도 모두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한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판례의 해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

지 아니한 때란 피상속인과 관련된 호적,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모두 추적 조사하여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또는 상속권자인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이 소명된 때를 말한다(서울가정법원 2006노단7162)”라고 보고 있다. 결국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이 거의 같아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무연고자로 본다 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아로 살아온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위의 3가지 사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유족 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조회되는 상속인은 없더라도 상속인 범위에 해당되는 친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나타난 상속인이 있더라도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발간한 민원상담매뉴얼(2017.6.) ‘19.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나타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⁵⁾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상속인을 수색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 상 상속인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의 생사나 행방을 모를 때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는 민법 조문의 취지 및 앞서 설명한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야 한다.⁶⁾

5)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친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6) ‘서울가정법원 2006노단716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고, 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인이 주소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부재자임을 소명해야 하며, 심판청구 절차 및 재산관리인의 역할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시에는 신문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든지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등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및 재산관리인의 역할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반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 행위 및 법원의 허가를 받은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며 5년 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실종 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면 상속인이 없는 상태가 되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1순위 상속인이 실종 선고에 의하여 사망처리가 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존재하게 되므로,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건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든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는바, 호적등본의 기재상으로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최선순위자로서 그의 딸인 000 및 차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다만 청구인은 선순위 상속인인 000이 행방 및 생사가 불명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때에는 000에 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행적을 찾을 수 없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부재한 상속인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북한에 있는 경우

북한에 고향이 있는 실향민들이나 탈북자가 사망한 경우, 북한에 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2012. 2. 10. 제정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상속인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북한의 상속인들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한 후 북한의 남아 있는 가족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개시되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가 이용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인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주소불명으로 상속인과 연락할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상속인을 찾을 수 없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문제는 피상속인들의 유족들이나 지인들이 북한에 상속인이 있는지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상속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우이다. 북한에 있는 해당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지인들이 북한에 상속인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신 이러한 경우 「남북가족특례법」에 의한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북한의 상속인들이 법원에 남한의 상속재산을 대신 관리해줄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북한의 상속인들이 실제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2항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대신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재산관리인은 북한주민을 대신해서 남한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재산의 보존행위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금지되고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사용, 관리할 수 있지만, 「남북가족특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북한주민 또는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접 사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에 상속인이 생존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경우, 북한의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북한 주민이 북한에 있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 또는 기타 외국으로 이주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역시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위 제척기한의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제척기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제척기한을 넘어선 청구를 인정해 줄 방법이 없다.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과 관련 판례에 따른 무연고자의 정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무연고자의 의미보다 좁고 엄격하다. 본 안내서에서는 민법 조문 및 법원의 판단에 근거한 법률적 의미로서의 무연고자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되, 무연고자 사망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및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상속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괄하여 무연고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게 해석하고자 한다. 즉,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피상속인의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희박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⁸⁾ 실질적인 무연고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온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건을 진행하였다. 기초수급을 받고 있던 임차인이 사망한 후 임차인의 상속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임대차보증금 및 유류물품을 처리하고 있지 못하던 상황에서(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 과정에서 청소비용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 등도 발생함) 임대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청구인이 되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를 한 사안이었다. 공익법센터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서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이 고독사한 경우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한 신속하고 간소한 유류품 정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심판 청구를 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 단, 하급심 판례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상속재산회복】에서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2. 5. 11.이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법원의 확립된 해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8) 주석민법, 상속법(2), 김주수, 김상용, 182쪽



기존의 판례(각주5)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증가, 가족관계의 변화,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 사회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나홀로 사망 혹은 고독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늘어가는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상속인의 부존재'의 범위를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 1 무연고자와 관련된 개별 법령

민법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의 처리 규정과는 별도로 무연고자의 재산처리 방법에 예외를 두고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무연고 시신의 장례를 원활히 하기 위해 특별히 연고자의 범위를 넓혀 정의하거나,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시설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속재산의 처분권한을 준 경우이다(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또, 장제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상속재산처리 방법이 아닌, 보다 간명한 방법으로 유류품을 처리하도록 정한 법률도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교도소나 군에서 사망한 특수한 사례에 한한다(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역시 민법의 절차를 따라야 함). 따라서 장제비용 마련을 위한 상속재산처리 또는 교도소나 군에서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처리를 제외한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는 현행법상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고자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12조에서 '무연고자 시신 등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무연고자로 보고 있다. 동법에서 말하는 연고자란 다음과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 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동법 시행령 제2조2(연고자)

제2조의2(연고자) 법 제2조제16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무연고자나 연고자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인복지법 제28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입소조치가 된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입소 시설의 장 등이 장례를 행하거나, 장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장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류물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이 무연고자를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제28조,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노인복지법 제28조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장제급여의 실시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유류금품의 처분을 통해 부족한 장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일종의 무연고자로 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동법 제2조(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동법 제2조(정의)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 법률에서도 수용자의 유류금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동법에서는 무연고자의 개념을 특별히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상속인에게 유류금품의 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한 고지를 하였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청구가 없는 경우와 알려줄 수 없는 경우(상속인이 파악되지 않는 등)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유류금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 말하는 유류금품의 내용 및 청구 절차를 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무연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①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상속인이 무연고자의 시신 포기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 갑이 최근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갑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갑에게는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갑의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지자체장은 형제들로부터 “시체처리 위임서⁹⁾”를 제출 받고 갑을 무연고자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처럼 형제들이 시신을 포기한 경우에도 갑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무연고자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개별 법령에서 연고자¹⁰⁾, 특별연고자, 보호자 등(이하 ‘연고자 등’이라고 함) 각 법령의 취지에 따라 상이한 범위의 ‘연고자 등’을 정해 놓고 그러한 ‘연고자 등이 없는 경우’를 ‘무연고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고자는 적용 법규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무연고자에 해당하려면 민법 제105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체처리 위임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례에서 비록 갑의 시신이 무연고 사망자의 예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인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실하므로, 갑은 민법 제1053조에 따른 법률적 의미의 무연고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형제들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갑이 남긴 재산의 처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는다면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형제들이 법적절차를 밟아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피상속인과 관련된 호적,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모두 추적 조사하여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또는 상속권자인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만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때로 보고 있으므로, 현재의 판례와 법원의 해석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고독사의 증가 등 사회적인 변화로 가족이 있더라도 연락이 두절되어서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야말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필요성이 있고, 잔여재산이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국고로 환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어 '상속인의 부존재'를 최소한 일상적인 의미의 무연고자, 즉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홀로 지내다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의뢰를 받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한 사례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인이 존재하나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선임결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오랜 기간 관계가 단절된 사정 등을 소명하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9) '시체처리 위임서란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시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무연고 시체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6. "연고자" 부분 참고



참고 2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서 작성례

“.....결국 본 건과 같이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이 고독사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한 신속하고 간소한 유류품 정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정 상속재산이 얼마 되지 않거나, 사망 전후의 정황 상 상속인과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존부가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상속인이 서류상 존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속인 수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인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를 위해 임대인이 거쳐야 되는 절차는?



무연고자인 갑이 사망 당시 살고 있던 임차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을이 갑이 남긴 보증금 500만원을 처리하고, 갑이 머물던 임차 주택에 남겨진 갑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을은 갑의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아갑과 동시에 임차주택을 을에게 인도할 것을(즉, 원상회복을 하여 집을 비워줄 것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대인인 을의 입장에서는 가족들과 단절되어 생활해온 갑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을은 우선 사망한 갑을 상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갑이 사망하여 상속인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혀 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상속인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의 점유는 이미 이전받았으나(즉, 사망한 임차인의 짐을 정리하여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로 주택을 인도받은 상황) 을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으로써 을은 갑에 대한 자신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임대차보증금 등)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소(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을 알 수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려는 경우 금전공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탁서에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른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보증금 액수 등을 기재하면 되므로 공탁서 작성은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을 하였으므로 피공탁자(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누구로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한 임차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방법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자에게 내일까지 삼백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는 내일이 지나면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법원에 삼백만 원을 (변제)공탁하면, 그 때로부터 삼백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 되어 더 이상 연체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통상 변제공탁은 돈을 받아야 할 자(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인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모르는 경우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공탁을 할 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의 란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탁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자신이 피공탁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라는 증명을 한 후 그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다.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관할법원 소재 공탁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무의 내용이 돈을 주는 것인 경우 보통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가 된다.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 2통과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각 피공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피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돈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공탁자는 위 돈을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을 해야 하고,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두 가지 원인이 모두 있다면 혼합공탁을 하여야 한다.

시설에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에 총당할 수 있나요?



시설 입소자가 무연고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상속인들에게 있으므로, 시설에서 상속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사용해 장례를 치를 경우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하게 됩니다. 만약 시설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장례비용이 부족하다면 일단 시설에서 장례비를 지출하고 이후 선임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청산절차 내에서 지출한 장례비를 환급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장제비용 총당을 위해 시설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무연고자의 유류품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시설을 규율하는 법률, 또는 무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를 살펴 특별히 장제비용의 총당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에서 장제비용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0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유족 수색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이 무연고자에 해당됨을 확인하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상속채권자, 상속재산 위에 담보권을 가지는 자, 유증을 받은 자, 특별연고자,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 등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거나 연체된 월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인, 망인의 장례비를 부담한 지인, 치료비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 등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질의응답집'의 '3-22 무연고 수급자 사망 시 유류품 처리절차'에 따르면 무연고 독거노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보장기관¹¹⁾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장기관이 민법 제1053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기관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인이 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가 인용된 사례들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¹²⁾ 망인으로부터 미납한 이용료가 있는 등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특정적 수증자, 혹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¹³⁾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2) 해당 시설이 법인이 아니라면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이 청구인이 됨.

13) 법원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경우 마땅한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연고자가 사회보장수급을 받고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의 지위에서 이해관계인이 되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연고자가 사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자 중 이해관계인 소명 사례

사회복지시설이 청구인이 되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할 때, 이해관계인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재를 하는 사례들도 있다.

“현재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류금을 보관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서에 의거하여 상속인의 부존재시 민법에서 정한 절차(민법 제1053조 이하 상속인의 부존재시 유류금 처리절차)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리해야 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의 청구를 제기 합니다.”





참고 4 검사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례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외에도 검사를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서울의 일부 지자체치단체(노원구청, 양천구청 등)에서 관할 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하여 검사에 의해서 선임 청구가 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였으나, 2012년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확인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검사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청구 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재까지 검사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검찰청 내에 관련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검찰 내부에 관련 매뉴얼이 부재하며, 그동안 축적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안에 대한 검사들의 인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검사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자로 실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처리 업무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비록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연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보장기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해석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라면 현행 법령상으로는 검사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연고 사망 증가에 따라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의 필요성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실제 구청에서 검사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인으로 하여 진행하였던 사례를 재구성하여 당시 작성하였던 서면 자료와 함께 매뉴얼에 수록하였다.

참고 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위한 준비 서류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는 피상속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2007. 12. 31.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1통
- 청구인, 재산관리인의주민등록표등(초)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참고 6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이해관계인이 되어 담당공무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나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록-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참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비용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및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부터 상속재산의 분여 또는 국가 귀속까지 총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2017년 기준).



주의하실 점은 인지대나 송달료 등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인상되기 때문에 아래의 표에 제시된 비용은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래에서 살펴볼 행복구청 사례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은 아래의 표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실제 사례의 기록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 무연고자 잔여재산 처리비용

항목	비용	비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및 공고 비용	인지대: 5,000원 송달료: 37,000원 관보게재료: 7,800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비용	예납금: 100-300만원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 또는 수증 신고의 공고 일간신문 광고료	10만원 - 60만원	일간신문에 따라 다름. 전국단위로 배포되는 신문이라면 어느 신문에 게재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저렴한 곳에 게재하면 됨.
상속인 수색의 공고 비용	인지대: 5,000원 송달료: 37,000원 관보 게재료: 7,800원	
상속관리인 재산처분 허가 청구 비용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	인지대: 5,000원 송달료: 37,000원	
상속재산관리상황 보고를 위한 우편 비용	1회당 2,280원	6개월 마다 보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청구	인지대: 5,000원 송달료: 37,000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공무원 등이 기존에 지급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자체 사회복지과 공무원으로서, 기초수급을 받다가 무연고로 사망하신 어르신 유류금품 처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판 청구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우선 제가 지출하였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 기존에 지급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 청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통상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판 청구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경우 서류발급 방법은?

 Q6

임차인인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임대인인 제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중 기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경우 연고자 외에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것을 명령하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이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6

시설에서 충당한 병원비가 있는 경우 무연고자의 임차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Q7

무연고자인 독거노인 갑은 최근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갑은 통장에 수급비로 받은 생계급여 100여만 원과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남아 있었고, 요양병원에서는 갑의 입원치료비 등 3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이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을 요양병원이 수령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바로 무연고자인 갑의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민법 제105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7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통장에 남아있는 금원의 출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수령 및 요양병원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가능합니다.

**무연고자의 지인은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치를 수 있나요?**

고아인 갑은 평생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갑과 알고 지내며 곁에서 갑을 돌봐온 지인 을은 가족도 한 명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한 갑이 안쓰러웠습니다. 갑은 생전에 입버릇처럼 자신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 말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달라고 을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무연고자인 갑의 장례는 구청에서 치러주겠지만, 그럴 경우 화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을은 갑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을은 갑이 남기고 간 임차보증금 천만 원으로 갑의 장례라도 그럴듯하게 치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을은 갑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이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갑의 장례를 치러 줄 경우 갑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장례비용을 변제받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에 을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으로부터 장례비 상당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8



0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본인이 무연고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적당한 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누가 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달리 상속재산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 정해놓은 사항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속인 부존재 시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니 부득이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다.¹⁴⁾ 그러나 입소자가 사망하면 퇴소자가 되므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처리는 시설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이미 퇴소 처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시설의 종사자가 2년 가까이 걸리는 긴 시간동안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특별연고자의 지위에서 분여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설장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시 마땅히 상속재산관리인이 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사건본인 망 000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적당한 자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기도 한다.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민법 제1053조) 공고사항은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 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사망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이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법원

14)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를 치르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에 퇴소 보고를 하고 있음. 만약 구청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잔여재산을 계속 남겨둘 수 없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시설장이나 종사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소 보고와 함께 지자체에 상속재산처리 업무를 의뢰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준비 · 발의 중에 있음.

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이후 상속인이 나타나서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며,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5조).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다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51조 및 제78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의 심판은 당사자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3조 및 제78조).

소송이나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가 무연고로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만약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이러한 절차를 소송수계절차라고 한다. 한편, 사망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별도로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강제집행 도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계속 그 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만일 재산을 강제집행당하는 자(채무자 즉 피상속인)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 가령 채무자에 대한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알려줘야 하거나 경매개시결정이나 압류명령을 송달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에게 알려주면 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알려주면 된다. 만일 상속재산관리인도 선임되지 않은 단계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에게 집행에 필요한 사실들을 알려주면 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개임 청구 절차는?



구청 공무원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복지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개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직권으로 개임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및 제78조).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누군가가 이유를 붙여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상황을 가정법원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속재산관리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임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상속재산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기존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예를 들어 공무원인 상속재산관리인이 다른 업무로 발령이 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실종된 경우 등)을 소명하면서, 적당한 다른 사람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의 개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신청의 방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7 상속재산관리인 개임 허가 신청 예시

상속재산관리인 개임청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 ◎ ◎ ◎
 재산관리인 ○ ○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 ○○○을 해임하고 서울 ××구 ××동 1234
 ◇◇◇(××구청 공무원)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은 서울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이동과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상속재산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의 후임인 ◇◇◇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 ○. ○.

청구인 ◇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참고 8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 문제

법원에 무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적당한 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적당한 자를 지정해 주도록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관리인 후보자 목록(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에서 선정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비로 약 3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¹⁵⁾ 이론상 이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충당이 된다. 이때 법원은 보통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정명령을 내려 선임비를 예납할 것을 요구하는데, 미리 준비된 예산이 없다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처럼 비용 문제로 인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자체 공무원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상속재산의 국고귀속까지는 그 절차가 2년간 소요되는 바, 이러한 점과 공무원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추천하고, 그 공무원의 자격, 근무지, 담당사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정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경우에는 그 특정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적합한 인물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자연인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다.

15)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참고 9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있는 후 법원에서 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0가정법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

이 법원 2017느단0000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법 제10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한다.

다음

- | | |
|------------|----------------------------|
| 1. 심판청구인 | 000
주소 |
| 1. 피상속인 | 000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
| 1. 피상속인의 | 출생 장소
생년월일
사망일시 및 장소 |
| 1. 상속재산관리인 | 000
주소 |

2017. 0. 0.

판사 000(인)



Q1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도 심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 가사소송규칙 제41조 및 제78조).

A10

Q11

상속재산관리인도 보수를 받나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및 제26조). 변호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이 될 경우 보수는 통상 100~300만 원 정도가 되며, 법원에서 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서 관리인의 보수를 미리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A11

이와 같이 변호사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려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이 소액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재산 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기에 현저히 적은 경우에 법원은 무보수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무연고자가 생활했던 시설의 시설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04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재산 관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재산상황 보고를 위한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 채무 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및 제24조, 가사소송규칙 제44조, 제47조 및 제78조). 대개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하면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법원에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명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 5. 2.부터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¹⁶⁾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보이면 공증인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8조 및 제78조).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민법 제1054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및 제26조).

한편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게 된다(민법 제1053조 및 제24조). 이 때 상속재산에서 임의로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비용지급청구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비용을 처리하게 된다.

16) 금융감독원의 관련 보도자료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읍·면·동에서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확인결과 이는 행정안전부와는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은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고객플라자, 한화생명고객센터, KB생명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만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2017. 9. 기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은?

Q12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있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의 주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6개월마다 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 상황에 관한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대개 재산목록 작성 시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하게 되는 첫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A12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상속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및 개량행위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선임 결정이 있으면 바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이용행위 및 개량행위의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¹⁷⁾

- 보존행위 : 주택의 수리, 소멸시효 중단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등(가치의 감소를 막고 유지하는 행위)
- 이용행위 : 물건의 임대, 이자부로 금전 대여 등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행위)
- 개량행위 : 무이자채권을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등(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17) 본 매뉴얼에서 대표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례는 생전에 사회보장수급을 받는 등 유류 재산이 소액인 경우이므로 특별히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상속재산관리인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 행위에 대한 허가’(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재산처분 허가 청구’)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25조, 제118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 재산은 대개 은행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인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할 경우 이들 행위를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통 예금의 경우, 특정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의 마지막 절차로 국가 귀속을 시키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게 된다. 즉, 예금 인출 후 특정한 처분 행위가 따르게 되므로 예금 인출 시 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정한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재산관리인의 계좌로 이전하여 보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 즉, 권한초과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후자와 같은 경우에도 먼저 법원의 허가를 구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행위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연체차임 및 미납 관리비, 기타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결국 일정한 처분 행위가 수반되어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 처리 절차 및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본서 ‘Ⅲ. 행복구청 김나영계장의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 사례’를 참고).

한편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예: 처분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제24조).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체납비용 공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3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어 피상속인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더니, 임대인이 밀린 월세와 체납된 수도 요금 등을 공제한 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비용을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임대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체납된 관리비 등을 공제하려면 이에 관한 증거(월세가 입금된 통장 내역, 체납된 관리비 고지서 등)를 임대인 측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공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13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4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더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반환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인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이용하거나, 법원을 통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가능)을 통해 소송보다 더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사건심판청구와 일반 민사소송 형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역시 앞에서 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서처럼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전자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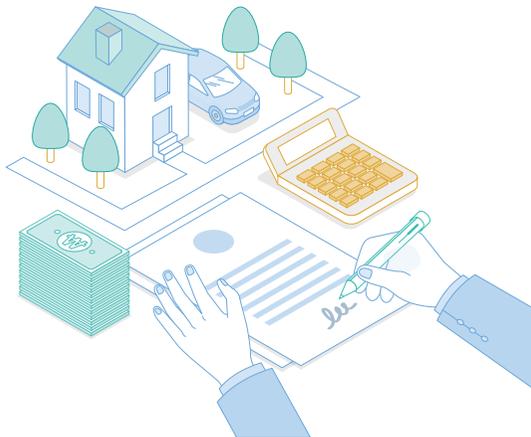
A14

참고 10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법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며 소송보다 간편한 독촉절차로,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462조).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주체인 임대인이므로 누가 계약의 당사자이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인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인 상속재산관리인, 임대인인 채무자,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청구취지와 그 청구원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채무자, 즉 임대인은 지급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독촉절차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상속재산관리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05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유증을 받은 것)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56조). 이때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88조 제3항),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 및 수증신고의 공고를 하려면 한정승인 공고와 마찬가지로 신문 공고를 이용하게 되며, 신문 공고 비용은 비용지급청구를 통해 사후에 상속재산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공고를 할 때,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및 제88조). 한편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56조 및 제89조).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56조 및 제1033조).

참고 11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예시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민법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의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7년 0월 0일

가. 사건번호 : 2017ㄴ단000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나. 청구인 : (성명)
(주소)

다. 재산관리인 : (성명)
(주소)

라. 사 망 자

- (1) 성 명 : 000(무직)
- (2) 출생일 : 0000.00.00, 사망일 : 0000. 00. 00.
- (3) 최후주소 :

마. 신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06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기간 만료 후 변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56조, 제1034조, 제1036조).

변제의 순서¹⁸⁾

① 저당권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순위에 따른 변제) → ② 우선권이 없는 채권자들(각 채권 액수에 따른 안분 변제) → ③ 유증을 받은 사람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하여야 하며,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및 제1035조).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1056조 및 제1037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지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1056조 및 제1039조).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순서에 따라 변제를 하지 않거나, 일을 게을리 해서 어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1056조 및 제1038조).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청산 과정에는 다소 복잡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며, 자칫 청산절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

18)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변제의 순서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것을 권한다.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속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청산 절차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면, 가급적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07 상속인 수색 공고

청산을 위한 신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57조).

이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상속인 수색 공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인 수색 공고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 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가사소송규칙 제80조 및 제79조).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이는 관보게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상속인수색공고를 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다.



0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 1057조의 2).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 피상속인의 부탁을 받아 피상속인과 선조의 제사를 지낼 사람,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 등이 특별연고자에 해당될 수 있다. 피상속인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특별연고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입소해 있던 사회복지시설은 특별연고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별연고자가 법원의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

과거에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분여청구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다. 통상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나 자신의 비용으로 피상속인을 간호하던 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를 하게 된다. 그런데 ‘과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었거나 과거에 피상속인을 간호했던 자도 분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특별연고자라도 분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줘야 할 필요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분여의 정도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의 특별연고자는 실제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분여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명이 분여청구를 한 경우 처리

가정법원은 여러 명이 분여청구를 한 경우 각 청구인 간의 청구 이유를 검토한 후 각 청구인에 대한 분여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를 분여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실무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여러 명이 분여청구를 하는 경우 병합하여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저는 서울시 ××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저희 시설에 계시던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신 후, 그분이 남기신 재산(은행 예금 천만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 사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채권 및 수증신고의 공고 및 상속인 수색 공고를 모두 마쳤고, 피상속인 생전에 요양원에서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요양원이 특별연고자로 위 은행 예금 중 오백만원에 대해 분여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아래의 예시¹⁹⁾를 참고하시어 귀하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분여결정이 있으면,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 실제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분여청구를 하면서 작성한 서식으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부터 제공받음.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

청구인 : ○○요양원
대표자 : 박○○(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서울시 ○○구 ○○○○

피상속인 : 망 김○○(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구 ○○○○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 오백만원을 분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0. 0. 0.부터 2000. 0. 0. 사망 시까지 00년 0개월 0일 동안 생활했던 중증장애인가족주거시설 00000의 대표자이며, 00000은 사회복지법인 00000의 산하 시설입니다(첨부자료, 청구인의 지위에 관한 서류 참조).

2. 피상속인은 뇌병변장애 1급 및 지적장애 1급의 중증중복장애인으로 2000. 0. 0.부터 서울○○병원(현 서울○○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다가 2000. 0. 0. 서울시 ○○구 ○○동 0000번지(현 서울시 ○○구 ○○로 000)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가족주거시설 00000에 입소하였습니다(소명자료 입소결정서, 서울○○병원 진단서, 전원 아동에 대한 종합소견서, 퇴원아동 입원 경위서). 입소 당시 호적이 없는 상태였으며 본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성을 김(金) 본을 한양(漢陽)으로 창설하였습니다. 00000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중증의 중복 장애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특별한 활동 없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돌보았습니다(소명자료,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아동관찰일지, 입소아동에 대한 종합 소견서, 생활인 관리카드, 생활인 개인기록 참조). 그러던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2000. 0. 0. 다시 서울○○병원에 입원 치료 중 2000. 0. 0. 사망하였습니다(첨부자료 퇴소보고서).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귀원 2015년단 0000호로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 2000. 0. 0. 조○○번호사(청구 당시 사무실 주소: 서울시 ○○구 ○○○○ 현 사무실 주소: 서울시 ○○구 ○○로 0000)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관리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00. 0. 00.까지를 만료일로 하는 상속인수색 공고를 하였으나 2000. 0. 0. 분여 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인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현재 상속인의 재산은 귀원 2015년단 0000 권한초과행위 허가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조○○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첨부자료 피상속인 통장 사본).

4. 본 청구인은 위에서와 같이 14여년 간 피상속인을 보살피 왔으며 그 비용은 정부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등 소모품의 경우 정부보조금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대부분 후원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재산의 수입원(收入源)은 장애수당, 장애연금, 기타 위문비 등이었으며 지출은 본인의 병원비가 대부분으로 입소 기간 중 총 지출액은 0000원입니다(첨부자료 피상속인 통장 사본).

5.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하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침인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2012년도까지는 장애인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수당 잔액은 본인 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설 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하되, 동수입금은 시설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하도록 하였습니다(첨부자료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하지만 2013년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용 장애인 사망 시 재산 처분 절차 규정을 강화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O. O.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특별연고자이므로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하여 줄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자료

1. 청구인의 지위에 관한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
 - 입소결정서
 - 서울특별시립아동병원 진단서
 - 전원 아동에 대한 종합소견서
 - 퇴원아동 입원경위서
 - 입소 아동에 대한 종합 소견서
 - 장애인 증명서
 - 장애등급 결정서
 - 아동관찰일지
 - 생활인 관리카드
 - 생활인 개인기록
 - 퇴소보고서
3.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서류
 - 피상속인의 통장 사본 1부.
4.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지침
 -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부.
 -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부.

2000. O. O.

청구인 00000 대표 박OO (인)

서울 가정법원 귀중



09 국가 귀속

특별연고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아직 청산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귀속된 후에는 변제 청구가 금지된다(민법 제1059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절차는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이하 '귀속상속재산법'이라 한다)을 따르게 된다.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절차에 대하여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으며,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⁰⁾

남은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즉 해당 재산을 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을 인출해야 하는 등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필요할 때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행위 허가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된다.

20) 관련 사례로는 2016. 10. 1. 안산시가 안산세무소에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협조 공문을 보낸 후, 10. 13. 안산세무서로부터 이체계좌를 안내받은 경우 등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나요?**

민법 상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에 따른 업무 등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가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 재산을 사망자의 주소지 지자체(구청)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과거 (2003년) 서울의 한 지자체(구청)가 신청한 상속재산의 처분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것을 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유사사례(서울가정법원 2014년 단 6057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재산처분 허가)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무연고자인 사건본인의 상속재산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보호업무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에 따른 업무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귀속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법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²¹⁾

현행 민법 제1058조 제1항과 귀속상속재산법의 해석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절차까지 마친 상속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위 민법 제1058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귀속상속재산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해당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21) 이와 관련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귀속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기동민의 원 대표발의(2017. 4. 11.자)로 국회에 계류 중이나, 기획예산처 등은 국가 재정의 통일적·효율적 관리·배분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다.



참고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유류금품 처리

무연고자 사망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에 따라 국가는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장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무연고자의 재산가치 없는 유류품 처리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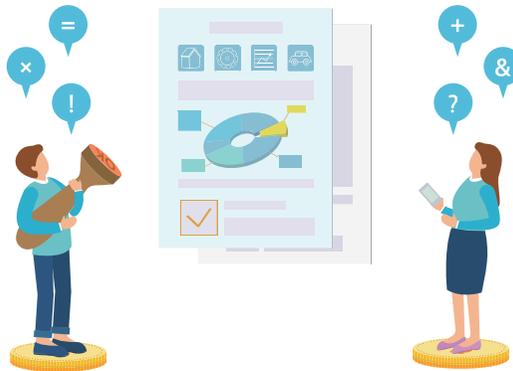
Q17

저는 지자체에서 무연고자 사망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최근에 한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병사를 하였는데, 그 시신이 경찰을 통해 지자체로 인계되었고,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장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숙인이 남긴 유류품 몇 가지가 저에게 인계가 되었는데, 낡은 옷가지와 수첩 등 재산적 가치는 전혀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사무함에는 위 노숙인의 유류품 외에도 이전에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보관해 둔 여러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들이 쌓여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지 임의로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민법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해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속인과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만약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A17

그런데 사례와 같이 무연고자가 남긴 유류품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²²⁾라면, 민법 제1053조가 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보존 및 청산의 대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류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유류품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관리인 선임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한 폐기 처분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²³⁾



- 22) 무연고자의 잔여재산(그 재산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종류를 불문하고)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민법 제1058조는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그 동산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하는 민법 제252조 제1항과 제2항의 특칙이다.
- 23) 향후 사례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무연고자의 유류품의 경우 사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이 직접 관리·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위탁하여 처분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무연고자의 유류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이를 다른 특별법에 의한 무연고자 관련 규정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행복구청 김나영계장의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사례

1. 무연고 사망자 발생 및 잔여재산 처리 요청 민원 발생
2. 관할 지방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요청
3.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4. 상속재산목록의 작성 및 보고
5. 상속재산의 관리
6.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III

행복구청 김나영계장의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사례

※ 다음 사례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실제 진행하였던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서부터 잔여재산의 국고귀속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에서의 무연고자는 지역사회에서 무연고로 사망하였고, 가족관계 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01

무연고 사망자 발생 및 잔여재산 처리 요청 민원 발생

- 2011. 5. 30. 서울시 행복구 관내 무연고자 이◇◇이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행복구는 망인의 제적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망인에게 가족이 없다는 것을 확인,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여 장례를 치름
- 2011. 6. 22. 망 이◇◇이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인인 김○○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함 (민원 사항: 망인의 짐을 치워 달라, 보증금을 반환하고 싶다)
- 2011. 9. 10. 행복구청은 구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민법에 따라 무연고자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팀장을 맡고 있던 김나영 계장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

02 관할 지방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요청

- 김나영 계장은 구청 고문변호사에게 수차례 자문을 구한 끝에 관할 지방검찰청²⁴⁾ 검사²⁵⁾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아래 [공문1]²⁶⁾을 발송함.
- 공문을 받은 서울○○지방검찰청은 검사 ◆◆◆로 하여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도록 지정함.
- 이에 검사 ◆◆◆은 [서식1]과 같이 망 이◇◇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행복구를 지정해달라는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함.

24)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에는 현재 다섯 개의 지방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서울서부 지방검찰청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서울북부 지방검찰청
종로구, 중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동대문구, 종량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25)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변인인]검사가 법원에 무연고자 잔여 재산을 처리 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의 잔여재산을 처리할 이해관계인으로서 망인이 살던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김ㅇㅇ이 청구인이 될 수도 있었으나, 김ㅇㅇ 본인이 청구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 부득이하게 검사에게 청구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26) [공문 1] 붙임에 피상속인(망인)의 재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무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망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재산(예금, 보험, 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시·군·구 지적과를 통해서 망인 소유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문1]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요청

행 복 구

수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공판과장)
(경유)

제목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요청

우리구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함에 따라 민법 제1058조에 의거, 상속인이 없는 복지수급자의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 내용 :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취지 : 망 이◇◇의 재산관리인으로 행복구를 선임
- 요 지

피상속인(망 이◇◇)은 별지 목록의 재산을 소유하고 서울시 행복구 복지동 주민센터에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로 보장을 받던 중 2011. 5. 31. 사망하였으나, 재산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어 이 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상속관리인으로 행복구를 선임해줄 것을 청구함

- 붙임. 1. 피상속인 재산명세서 1부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3. 영수증(사본)1부
 4. 통장내역서(사본) 1부
 5. 제적등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무연고자 사망자 공고관련 서류 일체 1부. 끝

서울특별시 행복구청장

통합관리팀장 김나영

주민생활지원과장

협조자 법제팀장

시행 주민생활지원과 - 25292 (2011. 11. 11.) 접수

우 123-456 서울 행복구 복지동

전화 (02) / 전송 (02) /

[서식1]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¹⁾
 서울 행복구 희망동 123번지

사건본인 망 이◇◇ (1940.05.10.)
 (피상속인) 등락기준지 전북 △△군 △△면 △△리 182
 최후주소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13 지층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이◇◇(1940.05.10.)의 재산관리인으로 행복구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고, 사건본인은 70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2011. 5. 30.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3 지층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고독사한 무연고자입니다.

나. 사건본인은 2011. 5. 30.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3 지층 자신의 집에서 사망할 당시, 위 주택을 그 소유자인 청구 외 김○○으로부터 보증금 금 10,000,000원, 월 차임 금 1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 실제 사례에서는 청구인란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로 담당 검사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그대로 인용이 되었으나 민법 상 검사가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청구인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 법원 실무는 검사 개인의 이름을 넣지 않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다. 독거노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사건본인이 위 집에서 홀로 사망한 후 평소 사건본인을 돌봐온 요양보호사 청구 외 △△△가 사건본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달리 가족이 없어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못하고 관할 구청에서 무연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라. 사건본인은 위 임차주택의 보증금 외에 〰〰은행 사건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 1,567,506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사건본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없습니다.

마. 따라서 위 상속재산의 처리와 사건본인이 남긴 유류품 정리를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사건본인이 사망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행복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각 1부 |
| 2. 납부서 | 1통 |

2011년 11월 21일

위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03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가. 법원의 보정명령

- 심판청구서를 검토한 서울가정법원 담당 판사는 [서식 2]와 같이 1.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구)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2. 망인의 부친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것, 3. 행복구 공무원 중 적합한 사람²⁷⁾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추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²⁸⁾을 함.



- 27)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적당한 자”를 선임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 보통 상속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게 되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으로 3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사례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김나영계장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기를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
- 28)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한다. 사례에서 판사는 1)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상속인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이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을 명하였고, 2) “행복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하는 검사의 청구에 대해, “행복구”가 아닌 행복구의 “공무원 중 적당한 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추천하라는 보정을 명한 것이다.



나. 민원서류 발급 의뢰 및 보정서류 제출

- 법원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중에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구)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은 행복구에서 곧바로 발급²⁹⁾ 가능한 것이었으나, 망인의 부친의 제적등본의 경우 행복구에서 달리 조회되는 것이 없어 망인의 본적지인 전북 △△군 △△면장에게 관련 서류의 존부를 확인 및 발급 협조 공문을 발송함³⁰⁾.
- △△면장은 망인의 부친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회신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
- 한편, “행복구” 대신 “행복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인 김나영 계장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추천하면서 1. 김나영 계장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총괄자인 점, 2. 김나영 계장이 현재의 직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당분간 인사발령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3.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의 업무 수행 도중에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사회복지직인 김나영 계장이 전혀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에 적합한 자임을 강조함.

다.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 상기의 보정서류를 제출 받은 판사는 검토 끝에 [서식3]과 같이 김나영 계장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고, [서식4]와 같이 관보에 공고함.

29)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가지고 행복구에 해당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30) 본 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 심판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지만, 실제 보정서류 준비 등 실무적인 절차는 행복구 김나영 계장이 서울◎◎지방검찰청의 실무자인 공판과 수사관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진행하였다.



[서식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제176××호

관 보

2012. 1. 9.(월요일)

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

이 법원 2011년 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법 제10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한다.

다 음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사건본인	망 이◇◇ (400510-1××××××)
	등록기준지 전북 △△군 △△면 △△리 182
	최후주소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13 지층
사건본인의	출생장소 전북 △△군 △△면 △△리 182
	생년월일 1940. 5. 10. 생
	사망일시 2011. 5. 30. 13:38 이전추정
	사망장소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13 지층
상속재산관리인	김나영(19641116-2××××××)
	서울 행복구 복지동 37 행복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011 12. 28.

판사 △ △ △

04 상속재산목록의 작성 및 보고

- 2012. 3.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김나영 계장은 [서식5]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함.

[서식5] 상속재산목록 및 수익상황

재산목록 및 수익상황					
사건	2011노단○○○○ 상속관리인선임	당사자	청구인 : 서울◎◎지방법원검사 사건본인(피상속인) : 이◇◇	작성일	2012. 1. 10.
번호	구분	사건 본인 재산의 종류			
I	동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현금 <input type="checkbox"/> 2.어음·수표 <input type="checkbox"/>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input type="checkbox"/> 4.금·은·백금류 <input type="checkbox"/>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input type="checkbox"/> 6.사무기구 <input type="checkbox"/> 7.가축 및 기계류 <input type="checkbox"/> 8.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input type="checkbox"/> 9.기타의 동산 <input type="checkbox"/> 10.부동산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11.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input type="checkbox"/> 12.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13.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14.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III	채권 기타의 청구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15.금전채권 <input type="checkbox"/> 16.대체물의 인도채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17.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 <input type="checkbox"/> 18.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input type="checkbox"/> 19.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0.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1.상표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2.저작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3.의장권·실용신안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4.기타(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실용신안권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V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25.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26.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동기·동류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input type="checkbox"/> 27.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			
VI	채무	<input type="checkbox"/> 28.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input type="checkbox"/> 29.그 밖의 채무			
VII	고정적 수입 등	<input type="checkbox"/> 30.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input type="checkbox"/> 31.그 밖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30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고정적 지출	<input type="checkbox"/> 32.향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I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재산의 종류	내역	접유 또는 관리자	수익상황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10,000,000원	임대인 김○○	김○○이 유류품처리비용, 수리비용, 연체차입 등의 공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향후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한 협의 필요
예금채권	금 597,841원	○○은행	
현금	금 975,550원	임대인 김○○	

본인은 사실대로 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위 상속재산관리인 김 나 영 (인)

05 상속재산의 관리

가.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 2012.4.4. 김나영 계장은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를 일간신문에 의뢰하였음.
- 신문광고 비용은 53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비용은 일단 행복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지급을 한 후 추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재산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나. 상속재산처분 허가 청구 및 상속재산처분(1차-예금인출 및 보증금 반환)

- 2012. 6. 김나영 계장은 망인이 남긴 은행 예금통장의 해지 및 인출, 임차보증금의 수령을 위하여 [서식6]과 같이 상속재산처분 허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서식7]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음.
-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김나영 계장은 망인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 잔액 금 1,573,391원을 인출한 후, 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인출한 금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음.
- 또한 임대인 김○○과 수차례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이 연체 차임 및 비용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금 7,989,300원을 반환받아 이 금원 역시 에 개설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음.



■ 임대보증금 정산내역

품명	금액(원)	비고
폐기물처리	350,000원	사망자 물품 폐기물처리
싱크대 수리비	160,000원	
도배, 장판	308,000원	
난방배관 및 미장마감	650,000원	
보조키	45,000원	
도시가스요금	163,380원	5월 미납액: 86,060원 6월 요금: 74,700원 7월 요금: 2,620원
전기요금	34,320원	5월 전기요금: 18,940원 6월 전기요금: 15,380원
임대료(5,6,7월분)	300,000원	폐기물처리: 2011.7.8.
합계	2,010,700원	잔액: 7,989,300원

■ 임대보증금 정산 주요내용

● 집수리부분

- 망 이◇◇이 거주 시, 집주인과 사전 의논 없이 누수가 있다고 수리업자를 불러 수리한 부분과 그로 인한 도배 · 장판 비용을 이사 시 부담하기로 하였다함(보증인으로 이웃주민 2인 확인 첨부)
- 난방배관은 사망 시 보일러를 고온으로 장시간 틀어놓아 과열로 고장이나 수리하였고, 싱크대는 사망자에 대한 물품을 바로 치우지 못하여 음식물 등이 부패되며 해충이 생기고 냄새가 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되어 부분 교체

● **공과금 부분** : 사망 전 공과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되었고, 사망일은 2011.5.31.이나 사용하던 가전제품 처리일은 7.8.로 사망이후에도 요금 발생

● **임대료** : 사망한 달 5월 임대료와 사망자가 사용하던 물품을 처리한 7월까지(3개월)

[서식6] 상속재산관리인 재산처분 허가 청구

상속재산관리인 재산처분 허가 청구

청구인(상속재산관리인) 김나영(19641116-2×××××××)
 서울 행복구 복지동 37 행복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건본인(피상속인) 이◇◇ (19400510-1×××××××)
 2011. 5. 30. 사망
 최후주소 :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13 지층
 등록기준지 : 전북 △△군 △△면 △△리 182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번호 80×-21-05××-70×)을 해지 및 인출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2.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3 지층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연체 차임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행위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인은 귀원 2011년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에 관하여 2011.12.28.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의 상속재산으로 ♣♣은행 예금과 최후주소지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바, 예금의 해지 및 인출과, 보증금의 수령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재산처분 행위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통장사본 1통
2. 재직증명서(청구인) 1통
3. 재산관리인선임심판등본 사본 1통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4. 납부서 1통

2012년 6월 일

위 청구인 김나영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4. 청구인(재산관리인)은 이 심판 정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 위 1, 2, 3항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청구인(재산관리인)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원을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2. 7. 6.

판사 △△△

2012-0024449568-18CDE

위본트 발지용 바코드입니다.

2/2

서울가정법원

다. 상속인 수색공고

- 김나영 계장은 2012. 6. 1차로 예금 인출 및 보증금 반환의 허가를 구하는 동시에 [서식8]과 같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은 [서식9]와 같이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하였음.

[서식8] 상속인 수색공고 청구

상속인 수색공고 청구

청 구 인 상속재산관리인 김 나 영
 주소 서울 행복구 복지동 37 행복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02-0000-0000

피 상 속 인 이 ◇ ◇
 1940년 5월 10일생
 등록기준지 전북 △△군 △△면 △△리 182
 최후주소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13 지층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1년 단 0000 상속관리인선임 선임사건에 관하여 2011년 12월 26일 판 이◇◇의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의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고 후 2개월 내에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치 않아서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아직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치 않으므로, 다시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고를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상속재산 관리인선임 심판사본 | 1통 |
| 1. 상속권 주장의 최고 공고서 | 1통 |
| 1. 납 부 서 | 1통 |

2012년 6월 일

위 청구인 상속재산관리인
김 나 영 (인)

서울 가정 법 원 귀중

[서식9] 상속인 수색 공고

제185××호	관 보	2012. 7. 15.(금요일)
<p>서 울 가 정 법 원</p> <p>상속인 수색의 공고</p> <p>이 법원 2011노단○○○○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한다.</p> <p>다 음</p> <p>1. 심판청구인 김나영 (재산관리인) 서울 행복구 복지동 37 행복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망 이◇◇ 등록기준지 전북 △△군 △△면 △△리 182 최후주소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13 지층</p> <p>1.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전북 △△군 △△면 △△리 182 생년월일 1940. 5. 10. 생 사망일시 2011. 5. 30. 13:38 이전추정 사망장소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13 지층</p> <p>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2013. 7. 30.까지 그 권리를 주장할 것. 만약 위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 7. 1.</p> <p style="text-align: center;">판사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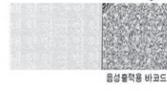
라. 상속재산 처분 허가 청구 및 상속재산처분(2차-소송비용 충당)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상속재산 관리를 위해 행복구가 선지출한 비용은 다음과 같음.

채권신고의 공고 일간신문 광고료	539,000원
상속관리인 재산처분 허가 청구 비용 1차	35,600원 (인지대 5,000원, 송달료 30,600원 ³¹⁾)
상속인 수색의 공고 청구 비용	43,400원 (인지대 5,000원, 송달료 30,600원, 관보 게재료 7,800원)
상속관리인 재산처분 허가 청구 비용 2차	35,600원 (인지대 5,000원, 송달료 30,600원)
합 계	653,600원

- 2012. 9. 17. 김나영 계장은 상속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653,600원을 인출하여 선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집행하였음[서식10].

31) 2017. 7. 현재는 송달료가 37,000원으로 인상되었음.



2012. 9. 17.

판사 △△△

2012-0025570318-E1HAG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2/4

서울가정법원



별지 1.

예금 계좌

예금채무자(금융기관) : **삼성은행**

예금채권자 : 김나영

계좌번호 : 514×××-01-080×××

예금액 : 금 9,498,860원

개좌개설일 : 2012. 8. 2. 글.



2012-0025570318-E1HAG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3/4

서울가정법원



별지 2.

상속재산관리 소송비용내역

상속재산관리 소요비용: 금 653,600원

상속재산관리 소요비용 내역

품명	금액(원)	내용
상속인 수색의 공고 일간신문 광고료	539,000	
2012년단○○○○ 상속관리인 재산처분허가 청구비용(1차)	35,600(인지대+송달료)	- 통장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 건
2012년단△△△△ 상속인 수색의 공고 청구비용	43,400(인지대+송달료+판보게재료)	
2012년단◇◇◇◇ 상속관리인 재산처분 허가 청구비용(2차)	35,600(인지대+송달료)	- 소송비용 정산 건
합계	653,600	

2012-0025570318-E1H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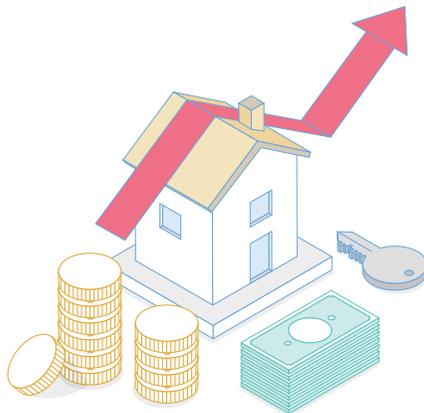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4/4

서울지방법원

마. 상속재산 처분 허가 청구(3차-지자체 세외수입 귀속)

-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이 만료 된 후 김나영 계장은 망인의 잔여재산을 행복구청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하였음.
- 허가 청구 당시 제출한 행복구청 주무부서인 복지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지원과로 바뀜)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존 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생활을 해왔고, 생활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되는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는 의견을 내었음.
-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무연고자인 사건본인의 상속재산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보호업무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에 따른 업무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행복구청의 세외수입으로 귀속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법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식11] 상속재산처분 불허가 결정




www.scourt.go.kr
www.scourt.go.kr
공상출력용 바코드

서울가정법원

심 판

사 건 2014노단○○○○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재산처분허가
 청구인 김나영
 (재산관리인) 서울 행복구 복지동 37 행복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건 본인 ◇◇◇ (400510-1×××××××)
 2011. 5. 30. 사망
 최후주소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13 지층
 등록기준지 전북 △△군 △△면 △△리 182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청구인(재산관리인)이 청구인 명의의 **송은은행** 예금(계좌번호 514×××-01-080×××)을 인출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이 유



2014-0037811413-00049 원본은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1/3

서울가정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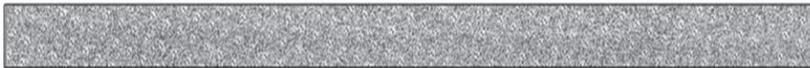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무연고자인 사건본인의 상속재산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보호업무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에 따른 업무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행복구청의 세외수입으로 귀속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법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4. 7. 3.

판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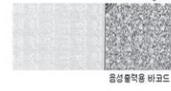


2014-0037811413-00049

회번호 받지않바코드입니다.

2/3

서울가정법원



정본입니다.

2014. 7. 4.

서울가정법원

법원주사 ◇ ◇ ◇ (인)

2014-0037811413-00049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3/3

서울가정법원

06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법원으로부터 잔여재산을 행복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가 받지 못한 김나영계장은 [공문3]과 같이 행복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였음.

[공문3] 상속재산 국고 귀속 요청

행 복 구

수신 ○○세무서장
(경유)
제목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국고귀속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58조에 1항에 의거, 아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관리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이전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 인적사항 및 상속재산

성 명	생년월일	최후주소	상속재산
이◇◇	1940.05.10	서울 행복구 복지동 715-13 지층	8,817,560원

끝.

서울특별시 행복구청장

희망복지팀장 김나영 복지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복지지원과 - 12996 (2014. 08. 08.) 접수
우 123-456 서울 행복구 복지동
전화 (02) / 전송 (02) /



※ 상속재산 국고 귀속 사건진행 일지

날짜	사건진행
2011/05/30	무연고자 자택에서 사망
2011/06/22	망인이 살던 집 임대인이 민원제기
2011/09/10	구청내부 논의 끝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잔여재산 처리 결정
2011/11/11	검찰청에 공문 발송
2011/11/21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2011/12/26	법원에서 김나영계장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
2011/12/28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관보 게재
2012/03/15	김나영계장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보고
2012/04/04	일간신문에 상속채권 및 수증 신고 공고
2012/06/07	1차 상속재산처분허가 청구(예금 인출 및 보증금 수령)
2012/06/07	상속인 수색 공고 청구
2012/07/01	상속인 수색 공고 관보 게재
2012/07/06	1차 상속재산처분허가 결정
2012/08/08	망인 예금 인출 및 보증금 수령하여 김나영계장 명의 통장에 입금
2012/09/17	2차 상속재산처분 허가 결정(소송비용 총당)
2013/07/30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2014/06/10	3차 상속재산처분허가 청구(지자체 세외수입 귀속)
2014/07/04	3차 상속재산처분 불허가 결정
2014/08/08	관할세무서장을 통한 상속재산 국고귀속 완료

IV

마치며





IV

마치며

이제까지 살펴본 무연고자 사망 시의 상속재산처리 절차는 일견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 상 이와 같은 처리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복잡해 보이는 무연고자 사망 시의 상속재산처리 절차는 상속인을 찾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만일, 상속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없애거나 채권신고 기간을 줄이는 경우 채권자들의 권익을 해할 수 있고, 상속인을 찾는 절차를 없애거나 그 기간을 줄이는 경우 잠재적 상속인들의 권익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간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특정한 장소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한 후 그 장소의 관리자가 사망한 자의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 경우에만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류금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하고 원활한 장례의 진행을 위해서는 유류금품에서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더 확대하여야 한다. 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자의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유류금품으로서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법령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유류금품으로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장애인복지법 제82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노인복지법 제48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지연됨으로써 전체적인 상속재산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이다. 현행 민법 제1053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검사를 두고 있는데, 실제 검사들이 이러한 선임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검찰청 내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따로 배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원활하게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해석으로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권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해석에 맡기기보다 명확히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비단 무연고 사망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 무연고자가 남긴 재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보수는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 등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률적 의미에서 각종의 재산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채권자 등에게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경우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다. 특히 상속재산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오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에게는 어느 수준 이상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다보니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도 적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높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높은 보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간혹 시설 내 종사자가 상속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심지어 시설에 출입하는 간호사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의 공공 후견인제도처럼 공공영역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수월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공공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와 연합하여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하나로 인정해주는 등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쉽게 상속재산관리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무연고 사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을 낮은 비용에 선임해주는 가칭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지원 사업’도 고려해볼만 하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복지재단의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업무협약을 맺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악성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뒤늦게 상속인으로 인정된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상속재산이 이미 국고로 귀속된 후라면 그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민법 제1059조를 개정하거나 제1059조의2를 신설하여 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본 안내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연고자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인을 수색하는 일부터 막상 상속인이 있어도 행방을 찾지 못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상속인의 부재가 확인되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상속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다. 평소 홀로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사후 유류재산인 은행 예금, 임대차보증금, 유류물품의 처리 등에 대해 유언장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간명하게 유류금품을 정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되게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 록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Q & A 빨리 찾아보기





V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1. [서류제출]-[가사서류] 클릭



2. [가사서류]-[사건명 검색하기] 클릭



3. 사건명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조회

④ 사건명 검색

사건명

조회된 사건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분류	사건명	설명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혼인신고)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가능하다. 성립요건의 하자 즉, 혼인무효의 사유로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민법 제 809조제 1항(8촌 이내의 혈족사이 혼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이다.
이혼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의 무효는 혼인이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이혼의 성립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클릭

④ 사건명 검색

사건명

조회된 사건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분류	사건명	설명
상속에 관한 사건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앞 선택 후 [대리인 작성] 클릭

④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하고, 이때 소송관계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송달간주일은 1주가 지난 날 0시가 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소송관계인 중 1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6. *법원 선택 후 클릭

1 단계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 / 2단계 전자서명 / 3단계 소송비용납부 / 4단계 문서제출

1 사건정보

2 소명/첨부서류

3 작성문서확인

제출법원

- 법원

관할법원안내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

선택

- 지출가정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
- 인천가정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수원지방법원
- 성남지원
- 여주지원
- 평택지원
- 안산지원
- 안양지원
- 춘천지방법원
- 강릉지원
- 원주지원
- 속초지원
- 영월지원
- 대진가정법원
- 대진가정법원 홍성지원
- 대진가정법원 공주지원
- 대진가정법원 논산지원
- 대진가정법원 서산지원
- 대진가정법원 천안지원
- 청주지방법원
- 충주지원
- 제천지원
- 영동지원
- 대구가정법원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관할법원 찾기

당사자목록

당사자 구분

당사자	대표자	삭제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입력](#)

대리인목록

대리인구분

대리인상세	당사자	알림서비스	삭제	순서변경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입력](#)

[순서저장](#)

청구취지 입력

- 청구취지

* 필수입력사항

(0 / 4000 Bytes)

7. [당사자입력] 클릭

당사자목록

청구인 0명 / 상대방 0명

당사자입력

당사자 구분	당사자명	대표자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8. '청구인' 선택 후 '*필수입력사항(인격 구분/ 당사자명/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국적)'
입력 후 [저장] 클릭

● 당사자 기본정보 초기화 * 필수입력사항

● 당사자 구분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청구인과 사건본인 동일

● 인격 구분 자연인

● 주민등록번호 [] - [] 심판청구에 표시

● 당사자명 []
※ 당사자명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편번호찾기 국내주소가 아닌 경우 체크 후 우편번호 조회 없이 직접 입력하세요.
[]
※ 상세주소 표기 방법 : 동-호수 등 +(동명, 아파트/건물명)

● 송달장소 위 주소와 동일

● 등록기준지 [] 알 수 없음

● 국적 대한민국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 - [] 심판청구에 표시
전화번호 [] - [] - [] 심판청구에 표시
팩스번호 [] - [] - [] 심판청구에 표시

이메일 [] @ [] [] 심판청구에 표시

[저장] [닫기]

9. '사건본인' 선택 후 '*필수입력사항(인격 구분/ 당사자명/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국적)'
입력 후 [저장] 클릭

● 당사자 기본정보 초기화 * 필수입력사항

● 당사자 구분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 인격 구분 자연인

● 사건본인 유형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 - [] 심판청구에 표시

● 당사자명 []
※ 당사자명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편번호찾기 국내주소가 아닌 경우 체크 후 우편번호 조회 없이 직접 입력하세요.
[]
※ 상세주소 표기 방법 : 동-호수 등 +(동명, 아파트/건물명)

● 송달장소 위 주소와 동일

● 등록기준지 [] 알 수 없음

● 국적 대한민국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 - [] 심판청구에 표시
전화번호 [] - [] - [] 심판청구에 표시
팩스번호 [] - [] - [] 심판청구에 표시

이메일 [] @ [] [] 심판청구에 표시

[저장] [닫기]



10. [대리인 입력] 클릭

대리인목록						대리인입력
대리인구분	대리인명(회원아이디)	대리인상세	당사자	알림서비스	삭제	순서변경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 *필수입력사항(당사자/대리인구분/주민등록번호/대리인명/송달장소/연락처) 입력 후 [저장] 클릭

대리인기본정보 * 필수입력사항

*** 당사자** 당사자선택

*** 대리인구분** 소송수행자 내정보 가져오기

*** 주민등록번호** 회원정보 확인

*** 대리인명**
※ 대리인명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장소**
 당사자 송달장소와 동일
유편번호찾기
※ 상세주소 표기 방법 : 동·호수 등 + (동명, 아파트/건물명)

송달영수인 아이디 회원아이디 확인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선택 - - (필수입력사항) 심판청구에 표시
 전화번호 선택 - - (선택사항) 심판청구에 표시
 팩스번호 선택 - - (선택사항) 심판청구에 표시

*** 이메일** 심판청구에 표시

보조이메일

저장 닫기

12. *청구취지 / *청구원인 입력 후 [임시저장] [다음] 클릭

청구취지 입력 * 필수입력사항

*** 청구취지** 작성 예시 (94 / 4000 Bytes)

(예시)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취지별지 첨부하기

-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 PDF, HWP, DOC, DOC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PDF파일로 자동변환, 10MB까지 첨부가능)

청구원인 입력
* 필수입력사항

청구원인

직접입력 (89 / 4000 Bytes)

(예시)청구인은 ~이고 ~상할입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파일첨부

•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 PDF, HWP, DOC, DOC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PDF파일로 자동변환, 10MB까지 첨부가능)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사실만을 기재하여 작성하시고, 청구원인 이외 다른 기재내용은 첨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소명방법의 서류 [파일첨부] 후 [등록] 클릭

1

단계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
2단계 전자서명
3단계 소송비용납부
4단계 문서제출

1

2

3

소명서류제출
* 필수입력사항

- 소명서류(증거)는 단순한 첨부서류와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별도의 파일로 다음 단계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개의 파일에 여러 개의 소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소명서류목록' <입증서류분리> 을 클릭한 후 서증명별로 호증부호를 부여하여 소명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서류로 제출할 파일을 모두 선택하신 후 반드시 [등록]버튼을 눌러 소명서류목록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
파일첨부
선택삭제
모두삭제

파일 이름	파일크기
기본증명서.pdf	1,002.30KB
가족관계증명서.pdf	344.91KB
말소 주민등록표등본.pdf	669.03KB

1.96MB/500.00MB

*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1.일반문서(PDF파일로 자동변환, 10MB까지 첨부가능): PDF, HWP, DOC, DOCX, TXT, XLS, XLSX,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2.멀티미디어자료(50MB까지 첨부가능): AVI, WMV, MP4, MPG, MPEG, ASF, MP3, WMA, MOV, PPT, PPTX

▶ PDF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일은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가 완료되면 [등록]버튼을 눌러 첨부파일을 소명서류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13



14. 소명방법의 서류 이외의 첨부서류를 [파일첨부] 후 [등록]

첨부서류 제출
* 필수입력사항

증거를 첨부서류로 입력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상속사건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적등본(2007.12.31 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1통
2. 말소된 주민등록등본(피상속인) 1통
3.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1통
4.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6. 재산증명서류 1통

* 서류명 파일명과 동일

* 파일첨부

파일첨부
선택삭제
모두삭제

파일 이름	파일크기
납부서.pdf	512.93KB
512.93KB/50.00MB	

•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1. 일반문서(PDF파일로 자동변환, 10MB까지 첨부가능) : PDF, HWP, DOC, DOCX, TXT, XLS, XLSX,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 PDF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일은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가 완료되면 [등록]버튼을 눌러 첨부파일을 첨부서류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15. 첨부서류목록 확인 후 [임시저장] [작성완료] 클릭

첨부서류목록
총 1건
* 필수입력사항

번호	* 서류명	파일명	등록일	삭제	순서변경
1	납부서	납부서.pdf (512.9KB)	2017.09.25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임시저장
이전
작성완료



17. [전자서명 요청] 클릭 후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다음] 클릭

2 단계

전자서명

1단계 문서작성 / **2단계 전자서명** / 3단계 소송비용납부 / 4단계 문서제출

전자서명 대상서류 총 5건

번호	구분	서류명	파일명	크기
1	소송문서	심판청구	심판청구(상속재·산관리인선임).pdf	74KB
2	증거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pdf	344.9KB
3	증거서류	기본증명서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pdf	1002.3KB
4	증거서류	말소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	말소 주민등록표등본.pdf	669KB
5	첨부서류	납부서	납부서.pdf	512.9KB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전자서명 요청

서류명의자의 전자서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구분	이름(회원아이디)	서명 요청 상태	이메일 발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구인 소송대리인		미요청	<input type="checkbox"/>

전자서명 요청
전자서명 요청 취소

▶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하려면 전자서명 요청 전에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요청 후엔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이메일 발송을 체크하면 전자서명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 전자서명 요청내역은 [나의전자소송 > 작성중서류] 메뉴의 '전자서명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이 완료된 문서는 [나의전자소송 > 작성중서류] 메뉴의 '제출대기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취소 후 원하는 문서 수정 단계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건정보 이동

이전
다음

18. '납부방식' 선택

3 단계

소송비용납부

1단계 문서작성 / 2단계 전자서명 / **3단계 소송비용납부** / 4단계 문서제출

소송비용

인 지 액	4,500원 (사천오백 원)	인지역 산정기준
송 달 료	22,200원 (이만이천이백 원)	송달료 산정기준

01. 납부방식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19. '납부정보' 입력하고 [납부] 선택 후 [다음] 클릭

02. 납부정보

인지액 납부

금액	4,500 원 (사천오백 원)	* 병합청구 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가 위 표시금액과 다른 경우 금액을 수정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당사자	납부당사자선택	
납부인	성명	납부인선택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환급계좌 은행선택 계좌번호 예금주

▶ 환급(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계좌로 환급하오니, 납부당사자와 환급계좌 명의인이 일치하도록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당사자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당사자이며, 납부당사자와 비용 납부인이 다른 경우(대리인이 납부하는 경우) 납부인선택 버튼을 눌러 납부인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정액 인지비용은 금액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송달료 납부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

금액	22,200 원 (이만이천이백 원)	
납부당사자	성명	납부당사자선택
	주소	
환급계좌	은행선택 <input type="text"/> 계좌번호 <input type="text"/> 예금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계좌확인"/>	

03. 결제정보

납부방식	가상계좌
가상계좌 납부은행	은행선택 <input type="text"/>
가상계좌 번호	납부버튼을 누르고 소송서류제출을 완료하면 접수 결과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지액) 4,500원 + (송달료) 22,200원 = (총 납부금액) 26,700원



20. [제출] 클릭

4 단계

문서제출

1단계 문서작성 / 2단계 전자서명 / 3단계 소송비용납부 / 4단계 **문서제출**

● 사건기본정보

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인지액	4,500 원	송달료	22,200 원
청구인		상대방	
청구인 대리인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사건이 이송되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번호	구분	서류명	파일명	파일크기
1	소송문서	심판청구	심판청구(상속재산관리인선임).pdf	74KB
2	증거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pdf	344.9KB
3	증거서류	기본증명서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pdf	1002.3KB
4	증거서류	말소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	말소 주민등록표등본.pdf	669KB
5	첨부서류	납부서	납부서.pdf	512.9KB

● 전자서명내역

서명자구분	서명자	서명요청일시	서명일시
청구인 소송대리인		2017-09-27 11:11:11	2017-09-27 11:11:11

이전
제출

Q&A 빨리 찾아보기

- Q1. 상속인이 무연고자의 시신 포기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28p
- Q2. 임차인인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를 위해 임대인이 거쳐야 되는 절차는?30p
- Q3. 시설에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에 총당할 수 있나요? 33p
- Q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비용은?38p
- Q5.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공무원 등이 기존에 지급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39p
- Q6.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경우 서류발급 방법은?40p
- Q7. 시설에서 총당한 병원비가 있는 경우 무연고자의 임차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40p
- Q8. 무연고자의 지인은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치를 수 있나요?41p
- Q9. 상속재산관리인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개입 청구 절차는?44p
- Q1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48p
- Q11. 상속재산관리인도 보수를 받나요?48p
- Q1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은?50p
- Q13.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체납비용 공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52p
- Q14.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52p
- Q15.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59p
- Q16.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나요?63p
- Q17. 무연고자의 재산가치 없는 유류품 처리방법은?64p

집필위원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책임집필)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김용혁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송진성 법률홍닥터 변호사

임규선 법률홍닥터 변호사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서울시복지재단 2017-13

발행일 | 2017. 11. 10

발행처 |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 남기철

편집인 | 이상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전화 | 1670-0121

팩스 | 02-6353-0459

홈페이지 | www.welfare.seoul.kr

디자인/인쇄 |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스킴프린팅그룹(주)
02-2285-3366

I S B N | 978-89-6298-454-5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8층

Tel **1670-0121** H **swlc.welfare.seoul.kr**



*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